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92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24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3월 26일, 전석기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9년 4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전석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사회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, '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(안전총괄본부→안전총괄실)을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자연재난 정의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함.(안 제2조제1호)
- (2)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.(안 제2조제4호나목 및 안 제25조제1항)
 -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: “12월1일부터” → “11월15일부터”
 -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 : “15일”→ “10일”
- (3)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. (안 제11조제4항, 안 제12조제3항, 안 제31조제1항)
 - “안전총괄본부장” → “안전총괄실장”
 - “안전총괄본부” → “안전총괄실”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'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(안전총괄본부→안전총괄실)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조 제1항	자연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	자연재난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나목
제2조 제4항 나목	자연재난대책기간(겨울철의 경우):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	자연재난대책기간(겨울철의 경우):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	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 제1호나목
제11조 제4항	방송협의회의 위원장: 안전총괄본부장	방송협의회의 위원장: 안전총괄실장	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조제2항 및 제15조
제12조 제3항	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당연직 위원): 안전총괄본부장	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당연직 위원): 안전총괄실장	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조제2항 및 제15조
제25조 제1항	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기한: 15일 이내	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기한: 10일 이내	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2호
제31조 제1항	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소속: 안전총괄본부	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소속: 안전총괄실	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4조제2항 및 제15조
별지 제1호 서식	<p>사회재난 피해신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고인(성명, 생년월일, 주소) 피해내용(발생위치, 시설명, 물량) 첨부서류: 피해 입증 사진 등 	<p>사회재난 피해신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고인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전화번호 등) 피해자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세대주 여부, 가족수, 고등학생 수, 도시가스 사용 여부, 계좌번호 등) 피해내용(발생 일시, 장소, 인명피해, 시설피해 등) 확인사항(동일세대 신고여부, 타 시·군·구 피해신고 여부 등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/ 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/작성방법/처리절차 등 	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[별지 서식]

- 안 제2조제1항은 '미세먼지'를 '자연재난'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

을 2019.3.13.일 개정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‘법’)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‘사회재난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[표] 현행 대비 개정안 비교표(안 제2조제1항)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<u>자연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</u>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<u>자연재난</u>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.</p>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

- 2017.7월 서울시의회(도시안전건설위원회)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‘자연재난’에 포함시킨 바가 있음.
- 당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근거는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에 이미 유사한 “황사”가 포함되어 있었고 “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”까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세먼지가 황사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보았던 것임.
- 최근 한반도에 미세먼지 발생이 보다 심화되면서 국회 역시 미

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다만, 이를 자연재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끝에,

-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황사, 해염, 꽃가루 등의 자연적 요인보다는 발전, 산업, 수송, 생활 등의 인위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고 미세먼지는 현행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여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봐야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어서,
- 2019.3.13.일 동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본 조례 역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- 다음으로, 안 제2조제4항나목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현행 “12월 1일부터”에서 “11월 15일부터”로 수정하고 있는데, 이는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제1호나목(제정 2016.4.25.)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동절기 운영기간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.

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
제6조(중앙대책본부 운영기간) ①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대규모 재난(자연재난을 말한다)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
가. 하절기(夏節期):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

나. **동절기(冬節期): 매년 11월 15일부터**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

2.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·복구하는 기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.

- 다음으로, 안 제25조제1항은 사회재난 피해상황의 신고기한을 현행 “15일 이내”에서 “10일 이내”로 수정하려는 것 역시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2호(제정 2015.11.30.)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
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5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)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등"이라 한다)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.

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- 이와 함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양식인 안 별지 제1호 서식도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개정 2018.11.13.)에 따른 서식(사회재난 피해신고서)으로 교체하여 상위 규정과 통일을 기하고 있음.
-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4항, 제12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(2018.12.31.)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석기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9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6일
발 의 자 : 전석기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창원, 우형찬, 김춘례,
채유미, 김경우, 신정호,
권수정, 이성배, 김소양,
김화숙, 최기찬, 조상호,
이승미, 김인호, 최웅식,
김상훈, 박기재, 임종국,
추승우, 오현정, 이정인,
김소영 의원 (22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사회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, '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(안전총괄본부→안전총괄실)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자연재난 정의에서 미세면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함.(안 제2조제1호)
- 나.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. (안 제2조제4호나목 및 안 제25조제1항)
-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: “12월1일부터” → “11월15일부터”
 -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 : “15일”→ “10일”
- 다.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. (안 제11조제4항, 안 제12조제3항, 안 제31조제1항)
- “안전총괄본부장” → “안전총괄실장”
 - “안전총괄본부” → “안전총괄실”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자연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”을 “자연재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“12월 1일”을 “11월 15일”로 한다.

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총괄본부장”을 “안전총괄실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안전총괄본부장”을 “안전총괄실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15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안전총괄본부”를 “안전총괄실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사회재난 피해신고서

※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-

1. 신고인 정보 * 피해자와의 관계 [] 본인 [] 부모 [] 형제 [] 기타()

성명		주민등록번호	-
주소		휴대전화번호	- -

2. 피해자 정보 *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.

성명		주민등록번호	-		
주소					
주거 형태	소유자(실거주) [], 소유자(미거주) [], 세입자 [], 공공임대 세입자 []				
연락처	휴대전화	- -	통신사명 []KT []SKT []LGU+ []기타	가입자정보	성명: 생년월일:
	유선전화	() -	통신사명	가입자정보	성명: 생년월일:
세대주 여부	[] 세대주, [] 세대원		가족 수	명 (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)	
고등학생 수	() 고등학교 명		[비전문계 / 전문계]		
도시가스 사용 여부	여 [], 부 []		가입자명:	생년월일:	
계좌번호	은행명:	계좌번호:	예금주:		

3. 피해내용

피해발생 일시						
피해발생 장소						
인명 피해	신고	[] 사망·실종, [] 부상(부상 정도: , 치료기관명:) [] 사업피해(휴업 [] / 폐업 [] / 실직 [])				
	확정	[] 사망·실종, [] 부상(부상 정도:), [] 사업피해(휴업 []/폐업 []/실직 [])				
시설 피해	시설명	①	②	③	④	
	총면적(소유+임차)	①	②	③	④	
	면허·허가·등록 번호	①	②	③	④	
	피해 물량	신고	①	②	③	④
		확정	①	②	③	④
	피해 구분	①	②	③	④	
	피해 원인	①	②	③	④	
용자신청 여부	[]	[]	[]	[]		

4. 확인사항

동일세대 신고 여부	여 [], 부 []	내용:
타 시·군·구 피해신고 여부	여 [], 부 []	내용:

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○○구청장 또는 동장 귀하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제1호가목의 <u>자연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</u>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4. “자연재난대책기간”이란 자연재난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 다만,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·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겨울철의 경우 : 매년 <u>12월 1일</u> 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</p> <p>5. ~ 11. (생략)</p> <p>제11조(재난방송협의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방송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의 <u>안전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자연재난</u>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<u>11월 15일</u> -----</p> <p>5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재난방송협의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안전</u></p>

총괄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- 1. ~ 4. (생략)
- ⑤ (생략)

제1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、

- ② (생략)
- ③ 시의 안전총괄본부장,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④ ~ ⑨ (생략)

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

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、③ (생략)

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총괄본부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- ② ~ ④ (생략)

총괄실장-----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、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 안전총괄실장-----
- 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)

① -----
----- 10일 -----

- 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-----

----- 안전총괄실 -----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